

1. 개정이유

과태료 감경한도의 예외를 추가함으로써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」 등 다른 금융관련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,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부과 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한도의 예외사유로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과태료 예정금액의 총액이 법률상 최고 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(별표 3. 나. (3))를 추가(안 별표 3호 후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1

2) 입법예고문(안), 별첨2

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 호

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
일부개정고시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별표 제3호 후단 중 “나목”을 “나목 (3),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